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
번
호

350

제출년월일 : 1994. 6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, 263호 ('94. 5. 16.)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협평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함 (안 제2조).

□ 개정근거

-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, 263호)

□ 조례안 : 복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복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복임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 : 복임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: 복임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식탁료'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